종합재산관리 및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

2022. 10. 13.

금 융 위 원 회

│. 추진 배경

- □ (추진배경) 美·日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의 운용·관리·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
 - * GDP 대비 신탁 수탁고(%, '20): [日] 173 [美] 94 [韓] 53
 - 또한, **혁신기업** 등이 보유자산(지재권등) 유동화를 통해 자본시장 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신탁 활용
- □ (현황)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신탁 상품·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
 -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**금전신탁**과 **부동산신탁** (개발사업·담보대출등) 위주로 발전하여, **신탁의 다양한 기능 활용 제한**
 - * 신탁재산별 비중('21말): [금전] 50%(570조원), [부동산] 35%(403조원), [**종합재산**] **0.04%(0.6조원**)
 - 반면, 고령화, 국민재산축적 및 복지수요 증가 등 **사회·경제구조 변화**로 **새로운 자산관리** 및 **자산유동화** 등 **재산의 적극적 활용** 수요 증가
 - (i) (종합재산관리) 신탁이 금융상품 판매채널*로 활용중이고, 非금전 재산에 특화한 전문업자 부재** ☞ 종합재산관리 기능 육성 필요
 - * 소위 "상품성 신탁" : 편입상품을 신탁업자가 미리 정한 금전신탁(은행 ELT등)
 - ** 인가단위별 신탁회사 현황(개, '21) : [종합] 38 [부동산] 14 [금전] 9 [**非금전] 0**

 - * [例] 부동산, 저작권 등을 기초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5개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중
 - (iii) (상품다양성) 가업숭계·후견·복지 등 신탁으로 구현 가능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 未발달 🖙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
 - (iv) (소비자보호) 재산 소유권이 이전되고, 장기간 유지(예:死後까지) 되는 상품인 바, 두터운 소비자 보호 필요 🖙 수탁자 책임 강화 추진
 - □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가계의 종합재산관리, 중소·혁신기업 자금조달 등이 가능하도록, 신탁업 제도 개선 추진

Ⅱ. 신탁업 혁신 방안

기본방향

- ◇ 투자수단으로서의 신탁이 아닌,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·적극적으로 관리(all-in-one care)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 활성화
 - 1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
 - 취급 재산 다양화
 - ② 신탁회사의 비금융 전문기관 활용 제고
- 2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
- ❸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
- 3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
- ◆ 가업승계신탁·주택신탁 관련 제도 정비
- ⑤ 복지신탁 활성화(장애인신탁·후견신탁 등)
- 4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
- **6** 행위원칙 강화(선관의무 등)
- 신탁 보수·홍보 등 관련 관행 개선

1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

○ [□]취급재산 다양화, ^②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적인 신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탁업의 종합재산 관리 기능 강화

① 취급재산 다양화

- □ 시장수요가 큰 [●]채무, ^②담보권 등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
 - ※ (현황) 자본법 §103에서 신탁가능 재산으로 「금전, 증권, 금전채권, 동산, 부동산, 부동산 관련 권리, 무체재산권」의 7가지 재산 열거
 - ① (채무) 재산신탁시 동 재산에 결부된 채무의 신탁을 허용*(例:주담대)
 - * 과도한 채무신탁에 따른 신탁계정 부실화,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, 순재산이 (-)가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은 제한

- ② (담보권*) 재산의 原소유자(위탁자)가 <u>담보권신탁대출</u> 실행을 위해, 재산에서 **담보권만 분리하여 신탁**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소유권이 이전되는 담보신탁대출 대비, 위탁자의 안정적인 재산사용이 가능하고 (고객친화적), 수탁자도 예상하지 못한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이 없음

【담보권신탁대출과 유사 구조와의 비교】

구 분		담보신탁대출	담보권신탁대출	담보권설정	
구 조		원소유자 (채무자=위탁자) ● 재산 신탁	원소유자 (채무자=위탁자=소유자)	원소유자 (채무자=소유자)	
		● 수익권증서를 당보로 당보로 당보로(소유자=수탁자)	 ●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담보권신탁대출 (담보권자-수탁자) 	● 담보권 설정● 담보권에 기해 담보대출	
		은행 (채권자=수익자) ● 신탁의 수익권 증서 양도	은행 (채권자=수익권자) ● 신탁의 수 <mark>익권</mark> 증서 양도	은행 (채권자=수익권자)	
특징	소유권이전	有(소유권자=신탁업자)	無(소유권자=原소유자)	無(소유권자=原소유자)	
	原소유자 사용권	사용권 제한	사용권 보장	사용권 보장	
	수탁자 책임	大(::무과실책임도 부담)	小(∵ 소유권未이전)	해당없음(신탁이 아님)	
	도산격리성(담보력)	强	弱(∵소유권 未이전)	弱(∵소유권 未이전)	
	상대적 금리수준	低	中	高	
	담보권관리	용이(::수탁자 일괄 관리)	용이(::수탁자 일괄 관리)	어려움(특히, 신디론)	

- ➡ (기대효과) 고객 재산상황·목적 등에 맞는 **맞춤형 신탁*** 확대
 - * 例: [채무신탁] 해외 장기체류 중인 주재원,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이 잔여채무(주담대)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 가능
 - ❷ [담보권신탁]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를 1인(신탁업자)에게 집중시킴으로써, 채권자간 이견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 가능

② 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화·차별화된 서비스 제공

- □ 분야별 전문기관(병원,회계·세무법인 등)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, 신탁업무 위탁 관련 자본법 규정 정비
 - ※ (현황) 자본법 업무위탁 규정(§42)은 <u>신탁법 원칙과 상충</u>되는 측면*이 있고, 본질적 업무 위탁시 진입요건이 높은 신탁업 인가가 필요 ☞ 분야별 전문기관 참여 곤란
 - * 例 : [**자본법**] **사후통지**만으로 업무위탁 가능 ↔ [**신탁법**] 수익자 **사전동의** 필요(자기집행원칙)
 - ① (적정성심사) 신탁업자(금융회사)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맡길 전문 기관의 적정성을 심사 및 평가*
 - * [例] 업무관련 업력, 인적 전문성, 자본 적정성, 재무적 안정성, 이해상충 가능성 등

- ❷ (영업규제) 자본법상 신탁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인 바, <u>업무위탁</u> 관련 자본법 규제*를 원칙 적용(자본법§42)
 - * 업무처리 기록 유지,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, 업무위탁 운영기준 설정 등
 - 신탁업자(금융회사)의 **非금융 전문성을 보완**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, 전문기관의 **금융기능은 제한**하고, **신탁 특성**에 맞게 **규율체계 정비***
 - ※ [例] ① 전문기관은 인가·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지만, <u>본질적 업무 위탁도 허용</u> ② 고객의 事前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업무위탁 허용 / ③ 再위탁 불허
 - 한편, 전문기관은 **신탁업무 일부를 맡은 자**로서, 자신이 업무 일부를 수행중인 신탁계약에 대한 **투자권유**(소개) 가능*
 - * 현행법 상으로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에는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불가 제도 개선시, "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자신이 업무위탁 중인 유언대용신탁 계약 권유 가능"
- ❸ (사후관리) 신탁업자가 전문기관의 적정성을 심사한 바, 1차적으로 신탁업자가 전문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·감독
- ④ (금융당국) 사전신고-사후감독으로 업무위탁 규율 확립
 - (**사전신고**) 신탁업자는 전문기관 현황 및 적정성 심사결과 등을 금융당국에 **사전신고**한 후, 업무위탁 가능
 - (**사후감독**) 신탁업자의 전문기관 감독 결과 문제 발견시 **금감원에** 보고하고, 금감원은 전문기관 검사 및 위탁계약 취소·변경명령可
- → (기대효과) 신탁업자가 다양한 재산을 수탁받고, 이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맡김*으로써, 전문적·맞춤형 재산관리 기능 강화**
 - * **非신탁업자**인 전문기관은 신탁업자로부터 ¹⁰업무 일부를 위탁(업무위탁)받을 수는 있지만, ²⁰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**再신탁은 不許**(再신탁은 신탁업자 간에만 허용)
- ** [例]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**법무법인 ☞ 유언대용** 신탁 전문기관 특허권 관리·활용 등에 전문성 있는 **특허법인 ☞ 지식재산권(IP)** 신탁 전문기관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**의료법인** 및 **병원 ☞ 치매·요양** 신탁 전문기관 애완동물 관리에 전문성 있는 **동물병원 ☞ 애완동물** 신탁 전문기관

신탁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(신탁수익증권 제도화)

2

- ◇ 非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되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[□]발행-[□]판매-[□]운용 등 단계별 규제 정비
 - ※ (현황) 非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으나, <u>제도 활용 수요 증가</u>* ☞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면서, 유사기구와의 동일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
 - * 부동산·저작권 등 다양한 재산을 기초로 수익증권 발행(현재 5개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서비스 지정)
- ① (발행)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한 [●]재산종류, ^②발행자, ^③재산구성, ^④발행한도, ^⑤발행형태, ^⑤증권신고서 등 규제체계 정비
 - (재산종류) <u>금전을 제외*한 모든 재산</u>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 허용
 - * 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사실상 펀드(집합투자업)와 유사함을 감안해 제외
 - 단, 제도 도입취지(非유동자산의 유동화), 중소·혁신기업 유동화 수요,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, 재산별로 발행 제한 등 규율*
 - * [例] 부동산(관리처분신탁 한정)·금전채권(非금융법인기업이 위탁한 경우 한정)·무체재산권 ☞ 원칙적 허용 증권·동산·부동산관련권리·담보권 ☞ 혁신서비스 지정 건 등에 한해 개별 허용
 - ② (발행자)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발행은 <u>부동산신탁사</u>만 허용*, 여타 재산은 해당 재산 신탁이 가능한 은행·증권·보험 모두 허용
 - *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바, 전업주의 체계를 존중하여 제한. 단, 부신사의 경우, 리츠AMC로서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점을 감안해 허용

【신탁가능재산별 수익증권 발행】

구 분	부동산	금전채권	무체재산권	증권	동산	부동산관련권리	담보권	금전
허용여부	0			△ (건별 판단)				X
발행자	부신사 은행·증권·보험						Χ	

- ❸ (재산구성) 단일 종류 재산*으로 구성된 신탁만 수익증권 발행 허용
 - * 여러 재산으로 구성된 신탁은 가치평가가 곤란하고, 투자자 이해 가능성이 낮음
- ④ (발행한도)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內로 발행총액 제한(할증발행 금지)
- **⑤** (발행형태) 실물발행을 금지하고, 전자증권 발행만 허용
- ❻ (증권신고서) 공모일 경우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수준의 증권신고서 규제*를 적용하고, 유동화법에 준하는 자산유동화계획**도 첨부
 - * [例] 신탁업자:위탁자 관련 사항, 비용 및 과세 관련 사항, 신탁재산 평가:공시 관련 사항 등
 - ** [例] 유동화 대상 신탁자산 세부명세, 신탁재산 평가 내용, 신탁재산 관리 계획, 수익증권 종류 등

- ⑦ (부실재산유동화방지) 原소유자(위탁자)·신탁업자(수탁자)의 ⁽ⁱ⁾ 중권신고서 공동 제출^{*}, ⁽ⁱⁱ⁾ 각각 일정비율(例:3%) 후순위 신탁수익권(증권) 보유 의무화
 - *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原소유자(위탁자)의 재무·영업현황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 바, 위탁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부실재산 유동화(먹튀) 방지(일본도 동일) 중권신고서 허위·부실기재시, 재산 原소유자도 형사처벌(5年이하징역),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
- ② (판매) 수익증권은 아직 **정형화**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**익숙치 않은 상품**인 점을 감안해, [●]판매처를 인가하고, [●]행위·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
 - ① (판매처) 현행 펀드 투자매매·중개업 인가사례, 업권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신탁수익증권 투자매매업*·중개업** 인가단위 마련
 - * 투자매매업: [증권] 인수포함인가, [은행·보험] 인수제외인가, [부신사] 불허
 - ** 투자중개업 : 증권사만 우선 허용하되, 제도 안착 상황 점검후 단계적 확대 검토
 - ② (행위·판매규제) 투자매매·중개업에 적용되는 <u>자본법상 행위규제*,</u> 금소법 판매규제**를 동일 적용하고, 계열사 판매 제한(例:25%) 도입
 - * [例] 자기계약 금지, 최선집행의무, 불건전영업금지 등
 - ** [例] 설명의무, 적합성·적정성원칙(현행 펀드위험등급을 수익증권에 적용시 최고위험등급으로 분류) 등
- ③ (운용등) 펀드 관련 규율을 준용한 [●]정보제공 규제를 도입하고, 규제차익 발생 방지를 위한 ^②운용규제 장치 도입
 - ① (정보제공) 제3자 확인^{*}을 거쳐 자산현황(기준가격 등) 및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 등 공시, 투자자의 장부·서류열람권 보장 등
 - * 수익증권발행신탁은 펀드와 달리 신탁업자가 운용·수탁·판매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바, 정보공시前 제3자(예탁결제원, 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, 회계법인 등 활용 검토)의 확인 의무화
 - ② (운용규제) 증권신고서에 명시한 신탁재산의 관리·처분과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배분 外에는 운용행위 금지*
 - * 재산운용 결과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만 허용 ☞ 수익증권이 운용(펀드)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유도
 - → (기대효과) 유동화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
 중소·혁신 기업*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지원
 - *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제한(더불B이상) 때문에,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,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 등은 유동화법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한계
 - 조각투자, 주식소수점 거래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

- \Diamond \Box 가업승계 신탁, \Box 신탁된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, \Box 복지신탁 활성화 등을 통해,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 지원
- [] (가업승계신탁) 중소·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,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등 정비
 - **중소·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***에 편입된 주식은 **온전히 의결권 행사***가 가능하도록 허용
 - * 現자본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%로 제한 ☞ 중소·중견기업 가업승계신탁의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15%로 제한돼, 제도 활용에 어려움
 - ※ 「例〕① 중소·중견기업 사주가 위탁자이고 생전 수익자일 것, ② 사주가 자사주를 신탁할 것
 - ③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위탁자 생전에 설정된 신탁일 것
 - ④ 신탁업자가 가업승계신탁의 명칭으로 신고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신탁일 것
- ② (주택연금) 現주금공법상 "개인" 소유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 가능 ☞ 주택신탁시 소유권자가 변경(개인→신탁업자)되어, **주택연금 가입 어려움**
-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- ③ (복지시탁)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, 후견·장애인신탁 활성화 ☞ 관계기관 혐의 필요*
 - ※ [例] 후견신탁 관련 협의 필요사항
 - ㅇ 법정후견 개시 당시 피후견인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, 신탁 활용 권고
 - * [日] 후견인의 재산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주도로 후견신탁 도입("12) 및 활용 권유 ☞ 전체 성년후견의 약 10%가 후견신탁을 활용 중인 것으로 추정
 - ※ 신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 방안 등은 향후 검토 예정
 - ➡ (기대효과) 중소·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, 신탁된 주택의 활용도 제고, 후견·장애인 신탁을 통한 맞춤형 복지 수요 충족

4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

- □행위원칙 강화, □신탁보수 규율, □종합재산신탁 규율 정비, ④홍보규율, □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,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 추진
- ① (행위원칙) 자본법상 미흡한 일부 수탁자(신탁업자) 행위원칙을 [●]신탁법 수준으로 상향하고, 일부 원칙은 ^②신탁법+a 수준으로 상향
 - (신탁법 수준 상향) 多數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 신설
 - ② (신탁법+a 수준 상향) 신탁업자의 주요 행위원칙인 <u>선관의무</u>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*
 - * [韓] 선량한 관리자로서 "주의"를 다할 것, [美] "주의+전문성"을 다할 것
- ② (신탁보수) 1:1 계약보다는 금투상품의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 마련
 - 상품성신탁은 구조가 정형화돼 비교 가능성이 높은 바, 편입상품, 보수율 등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
 - 2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*
 - * [例] 고객에게 "1회성 수수료 선취" 또는 "주기적 신탁보수 수취" 옵션을 모두 제시하고, 각 옵션의 가입기간별(예:3,6,12개월) 비용 차이를 비교 설명
- ③ (종합재산신탁 금전운용) 일반 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설명의무*·운용규제** 등을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
 - * 계약체결·변경시 금전운용내용을 설명하고, 위탁자가 그 내용을 자필기재
 - ** 非지정형 운용의 경우,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운용하고, 운용내역 분기별 제공
- ④ (홍보규율) 상품성 신탁에 대한 홍보제한은 유지하되, 유언대용·후견· 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 허용
- 5 (거래투명성) 신탁재산으로 대외거래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유도
 - □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법 등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*
 - * 자본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(~'22말) → 자본법 개정안 국회 논의('23.1분기)